#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4

발의연월일: 2021. 4. 7.

발 의 자:류성걸·권명호·박대수

권성동 • 이철규 • 최승재

유창현 • 한무경 • 홍석준

이명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의 의무이행 여부 및 원산지표시대 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1절제5관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한다.

제2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0조의3(의무 이행 조사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227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 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 | 제240조의3(의무 이행 조사 등) 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 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 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 아 정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 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27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 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 3.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세관장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 탁받아 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 산지표시 관련 의무 위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